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4 - 0050호

『제품안전기본법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“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2월 27일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

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

2014. 2

산업통상자원부
국가기술표준원

❏ 목 차 ❏

I. 제1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추진 성과 평가	1
II. 최근 제품안전 사고 동향 및 향후 전망	6
III. 주요국 정책 동향 및 시사점	9
IV. 국내 정책방향 변화 및 제수립 필요성	11
V. 비전 및 추진전략	12
VI. 중점 추진과제	13
1. 시장감시 강화	13
2. 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	20
3.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	27
4. 소통·협력 증진	29
VII. 향후 추진일정	34

I 제1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추진 성과 평가

1 정책과제 이행평가

□ 2011년 3월 수립된 「제1차 제품안전 종합계획」에서는 제품안전 강화를 위한 4대 분야 17개 정책과제 제시

*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

〈제1차 종합계획 주요 내용〉

정책목표 :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 없는 국민생활 확보

- ① 사업자, 소비자의 자발적 제품안전관리 참여
- ② 안전한 제품유통을 위한 정보 및 협력 확대
- ③ 제품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립
- ④ 글로벌 협력강화 및 수입품 관리 내실화

□ 동 계획에서 제시된 4대 분야 17개 정책과제 추진실적 검토 결과 과제의 대부분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됨

○ 그러나, 유통업자와의 정보협력 채널 구축, 저가 수입품 감시활동 강화 등의 과제는 예산·인력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

주요 이행과제	주요 미흡과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인증제품 시장감시 활동 강화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margin-top: 10px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<안전성조사 제품 수></p>  <p>(단위: 개) 2011년 3,108 2013년 4,519 (31%▲)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<안전성조사 예산></p>  <p>(단위: 억) 2011년 21.5 2013년 34.7 (61%▲)</p> </div> </div> ▪ 제품안전정보 DB구축 및 활용 ▪ 제품안전사고 조사센터(11개) 지정·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유통업자와의 제품안전정보 협력채널 구축 미흡 ▪ 저가 수입품 감시를 위해 관세청과의 협력 부족

<참고 : 과제별 추진 현황 종합평가>

정 책 과 제		평 가
① 사업자, 소비자의 자발적 제품안전 관리 참여	(1-1)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제품안전 자율 점검 체제 구축	이행
	(1-2) 제품안전정책 지역순회 컨설팅·설명회 실시	이행
	(1-3) 자발적 제품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	미흡
	(1-4) 자발적 리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	이행
	(1-5) 사업자의 자발적 제품안전 연구·개발노력 유도	이행
②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정보 및 협력 확대	(2-1) 유통업자와의 제품안전정보 협력채널 구축	미흡
	(2-2)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교류 강화	미흡
	(2-3) 제품안전정보 DB구축 및 활용	이행
	(2-4)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콘텐츠 구축	이행
	(2-5) 제품안전정보 알림 Tool로 활용	이행
③ 제품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립	(3-1) 제품사고조사 프로세스 확립	이행
	(3-2) 원활한 리콜 수행을 위한 제품 구매자 정보제공 합법화	미흡
	(3-3) 제품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센터 지정·운영	이행
	(3-4) 실질적 사후관리가 가능한 전담조직으로 확충	이행
④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수입품 관리 내실화	(4-1) 다자, 양자간 글로벌 협력 내실화	이행
	(4-2) 다수입국 대상 국내 제품안전정책 홍보강화	이행
	(4-3) 저가 수입품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	미흡

2

종합 평가

잘된 점

①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공

- '12.7월 제품안전포털에 국내·외 리콜정보, 안전성조사 결과 및 소비자 위해정보 등을 추가로 DB화*하여 정보관리 체계 구축
 - 국내·외 리콜정보, 안전성조사 결과, 소비자위해정보, 소비자 불법 제품 모니터링정보, 제품인증정보 등으로 DB 재구성
- * 인증제품 검색, 불량제품 신고 및 기타 제품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'07.11월 부터 제품안전포털(www.safetykorea.kr) 운영 중
- 수집된 정보를 통해 제품인증정보, 주간 제품안전 동향* 등 서비스 제공
 - * 국내·외 리콜현황, 제품위해뉴스, 정책동향 등을 종합하여 제품안전포털에 공개

② 사고다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사고조사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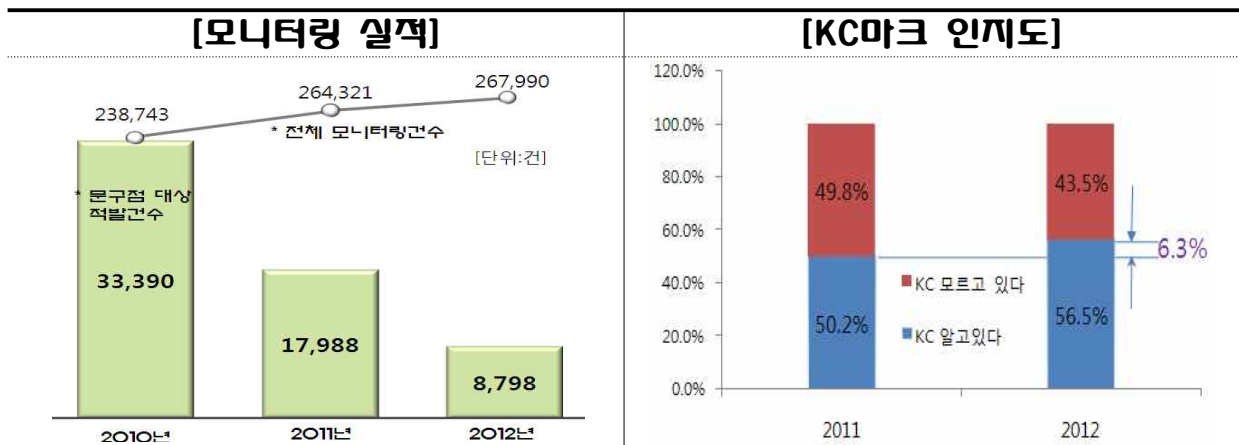
- '11.3월 사고유형·제품분야별로 11개 기관*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약 6건의 사고원인 조사·분석 및 후속조치 실시
- * 사고유형(기계·물리/화재·감전/독성)에 따라 5개 전문기관, 6개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센터 운영

[주요 제품사고조사 현황]

품목명	조치내역	품목명	조치내역
강화유리	규정개정 필요성 국토부 통지 ('11.7)	전기장판	안전기준 개정 ('12.10)
재생타이어	안전기준 개정 ('12.2)	회수건조기	안전기준 개정 진행 중
냉온정수기	안전기준 개정 ('12.8)	휴대용예초기	안전기준 개정 진행 중

③ 민간-정부 협력의 안전모니터링 효과성 제고

- 150명의 안전감시원이 전국 판매점에 대해 수시로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제품 유통을 실시간으로 차단
 - * 모니터링 실적 : ('10) 238,743건 → ('11) 264,321건 → ('12) 267,990건
- 어린이용품 판매점인 문구점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법제품 유통 감소
 - * 문구점, KC 미표시 제품 유통이 '10년 대비 '12년 70%이상 감소
- 안전모니터링과 병행하여 안전인증마크(KC) 홍보를 하여 안전관리 제도 인식 향상
 - * KC마크 인지도가 '12년에 '11년 대비 6.3%p(50.2%→56.5%) 상승



④ 국제기구 회의* 참여 및 양자간 제품안전 협력

- *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 : ICPHSO(국제제품안전보건기구 심포지움), ICPSO(국제소비자제품안전회의), OECD CCP(경제개발협력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) 등
- ICPHSO·ICPSO 심포지움 서울 개최('11), OECD CCP '위해도평가 워크숍' 발표('13) 등 제품안전 선진화 대열 참여에 노력
- 페루(INDECOPI,'11), 美(CPSC,'12), 브라질(INMETRO,'12)과 제품안전 관리제도 공유 및 인적 교류를 골자로 제품안전 업무협약 체결

미흡한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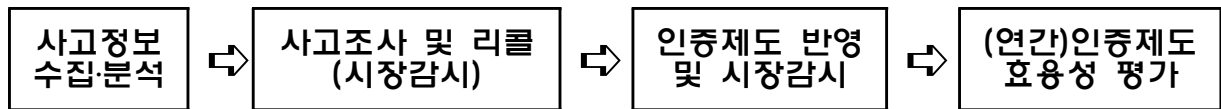
① 인증제도 중심의 제품안전관리로 신제품 대응 부족

- 인증대상 품목(약 280개)에 한정된 안전관리에 치중하여 제품시장 변화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대응 미흡

② 사고정보 기반의 선진형 제품안전관리체계 미흡

- 상해정보 수집 부족 및 사고조사기능 미흡으로 실제 소비자 피해 및 불만 해소에 미진

<사고정보 기반의 제품안전관리시스템>



③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족

- (관세청) 수입 통관 시 국가기술표준원 직원의 참여를 추진하였으나 근거법령 미비로 세관장확인물품 통보를 통한 안전관리에 국한

* '13년 현재 공산품 24품목, 전기용품 291제품 대상으로 세관장확인 품목 지정을 통해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

- (소비자단체) 시중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계획과 결과에 대한 공유 및 협의가 부족하고 소비자 불만 신고에 대한 정보교류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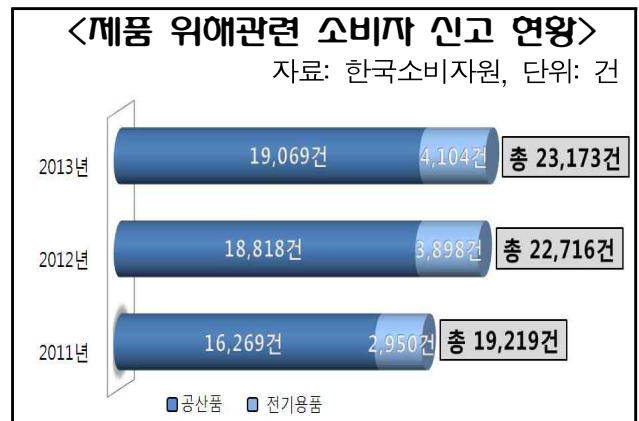
- (지자체) 사고 정보 수집 및 불법·불량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협력이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미흡

Ⅱ 최근 제품안전 사고 동향 및 향후 전망

1 제품안전 사고 동향

□ 소비자의 안전의식 상승 및 다양한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 제품 위해관련 소비자 신고 건수가 연평균 10%정도 지속적으로 증가

- 전기용품 관련 위해신고가 '11년 대비 '13년 약 39%로 급증하였으며,
- 공산품도 '11년 대비 '13년 약 17%로 높은 증가추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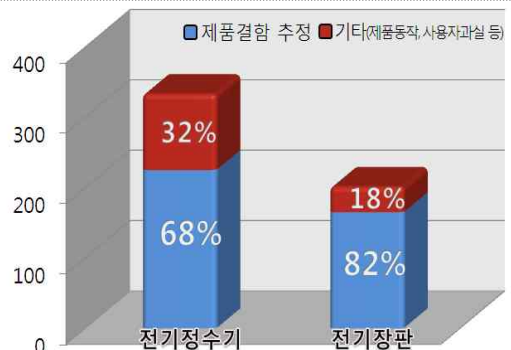
□ 의도적 제품 변경·부품 누락 등으로 인한 제품결합 추정 사고 발생

- 최근 전기용품 관련 주요 위해신고 다발 제품으로 전기정수기, 전기장판, 냉장냉동기기로 조사되었고,
 - 위해 신고원인으로는 제품자체 결함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남
 - * 특히, 전기정수기 사고신고 건수가 '11년 대비 '12년 2배 이상 급증

<위해신고 3대 상위품목 추이(전기용품)>



<상위 품목 위해신고 원인(2012년)>



* 자료: 한국소비자원

□ 국내외 리콜상위 품목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완구,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나타나 중점 관리대상으로 부각

○ (국내) 주로 제품 자체가 가진 위험성을 이유로(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등) 완구, 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리콜되고 있음

【 연도별 리콜 상위 품목 】

(리콜: 명령, 권고 합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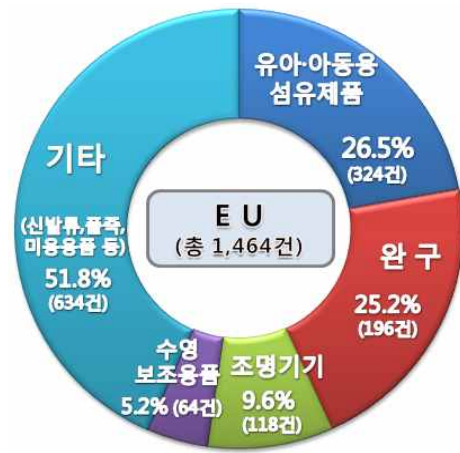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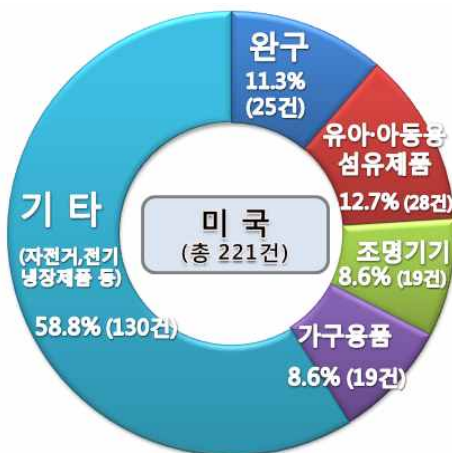
순위	2011년		2012년		2013년	
1	완 구	10건	완 구	25건	아동용 섬유제품	31건
2	어린이 장신구	8건	우산·양산	23건	완 구	29건
3	보행기, 아동용 섬유제품	각 7건	스테인레스 수세미	12건	우산·양산	21건
...	...	총 105건	...	총 157건	...	총 209건

- 어린이 사용 소제품 대상에서도 리콜건수가 급증하고 있음

* 어린이용품 리콜 추이 : ('11) 39건 → ('12) 40건 → ('13) 97건

○ (해외) 미국, EU의 경우 주로 제품 사용관점에서 나타나는 위해 요인*으로 인한 리콜 많음

* 자석이나 작은 부품 조각 등을 아동이 삼킬 우려나 의류에 달린 끈으로 인한 목졸림 가능성 등



* '13년 美(CPSC,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), EU(RAPEX, 소비자 안전 긴급경보시스템)가 공표한 리콜자료를 토대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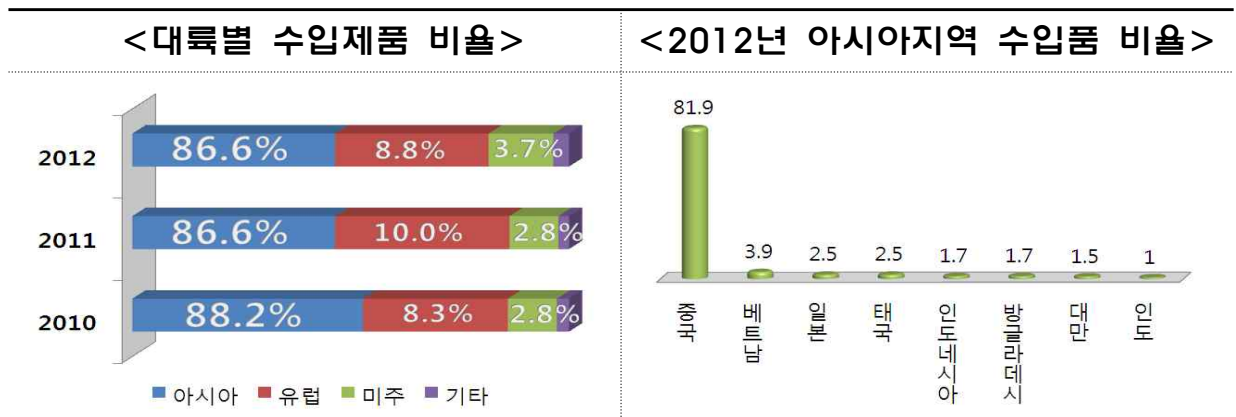
2

향후 전망

□ 중국·베트남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및 제품의 기능·형태 다양화 등으로 제품안전사고 증가 추세 지속 전망

○ 국내 인증제품(공산품, 전기용품) 중 아시아지역, 중국産 비율이 약 80%수준으로 위해제품 유입 가능성 높음

* 미국 내 안전관련 리콜제품의 약 85%가 수입제품이며,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보고됨



* 국내인증제품 기준 통계(Safetykorea)

□ 유통채널 다변화로 불량·불법제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

○ 최근 새로운 유통망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불량·불법제품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필요

* 온라인쇼핑몰 시장규모(조) : ('09) 27 → ('11) 41 → ('15 전망) 70

** '11년 온라인 쇼핑몰 판매제품 62,958건의 모니터링 결과 46%(29,132건)가 불법제품으로 나타남 (한국제품안전협회 조사)

□ 다양한 제품 출시로 인해 제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안전에 대한 부주의로 동일 사고 재발 우려

○ 제품 구조 복잡화 및 소비자 오사용 등으로 인해 기존에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 가능성 존재

Ⅲ 주요국 정책 동향 및 시사점

1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시장감시 기능 확충

□ 위해·사고 정보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성 평가 기반의 시장감시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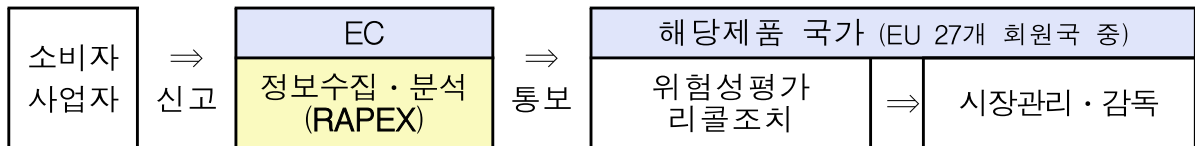
○ (미국) NEISS*, 웹포털 등으로부터 각종 상해·사고 정보를 취합하여 위험성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군 분류 및 리콜조치 등 수행

* 병원응급실을 통한 정보수집시스템(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)
↳ 100여개 종합병원으로부터 CPSC 웹을 통해 매년 약 36만건 보고

○ (EU) Rapex*를 운영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위험성을 평가하고 리콜 조치하는 등 시장감시 활동 수행

* (RAPEX) Rapid Alert System for non-food dangerous products, 위해정보수집시스템

<EU 위해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>



○ (일본) NITE(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)에서 제품사고조사 후 R-map(Risk-map)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경제산업성에 통보하여 리콜조치 등 수행

2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

□ 미국, 일본,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린이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 출시 전부터 안전성 확인 강화

○ (미국) 어린이용품을 중심으로 제3자 적합성확인, 제조물이력표시 및 어린이보호포장 제도 등을 운영

- (일본) 민간인증*(ST, SG마크)이 사실상 강제인증으로 통용되고 있어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전인증제도 운영
 - * 일본완구협회(Safety Toy mark), 일본제품안전협회(Safety Goods mark)
- (EU)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EU 차원의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운영 ('공통기준' 준수 의무화)

3 글로벌 안전관리 협업 확대

- 美 CPSC(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)는 수입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27개국*과 제품안전협약 체결 및 CBP(세관국경보호국) 등과 협력관계 구축
 - * EC회원국(12개국) 및 중국, 일본, 한국, 베트남, 페루 등 (15개국) 총 27개국
- OECD CCP, ICPSC*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진행
 - * OECD CCP :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, ICPSC : 국제소비자제품안전회의
- (리콜정보공유포털, OECD CCP) 미국 주도로 EU, 호주, 캐나다가 공동으로 포털을 구축하여 일반에 공개('12.10.19)
- (제조물이력추적제, ICPSC) '09년 유모차를 시범 품목으로 소비자가 제조이력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중(EC, 미국, 브라질 등 참여)



시사점

- ◆ 어린이제품 등 안전취약품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
- ◆ 사고정보 기반의 과학적 정보 수집 및 분석·평가 시스템 구축
- ◆ 위해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국내·외 기관과의 협력 확대

IV 국내 정책방향 변화 및 재수립 필요성

□ 그간 정책방향 변화

- ▶ '80~'90년대 '품질향상'에서 '00년대 이후 '소비자안전'으로 전환
 - 품질검사제도 중심에서 안전을 목적으로 現 인증제도로 전환

- ▶ '10년 이후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 개선
 - 제품출시 前 '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*' 도입
 - *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: 사업자 스스로 자사제품의 안전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·표시

- ▶ '11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을 통해 시장감시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
 - 소비자가 사용하는 쏠 제품 대상 리콜제도 도입
 -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·노약자에 대해서는 인증제도 강화

□ 시장환경을 고려한 정책 재수립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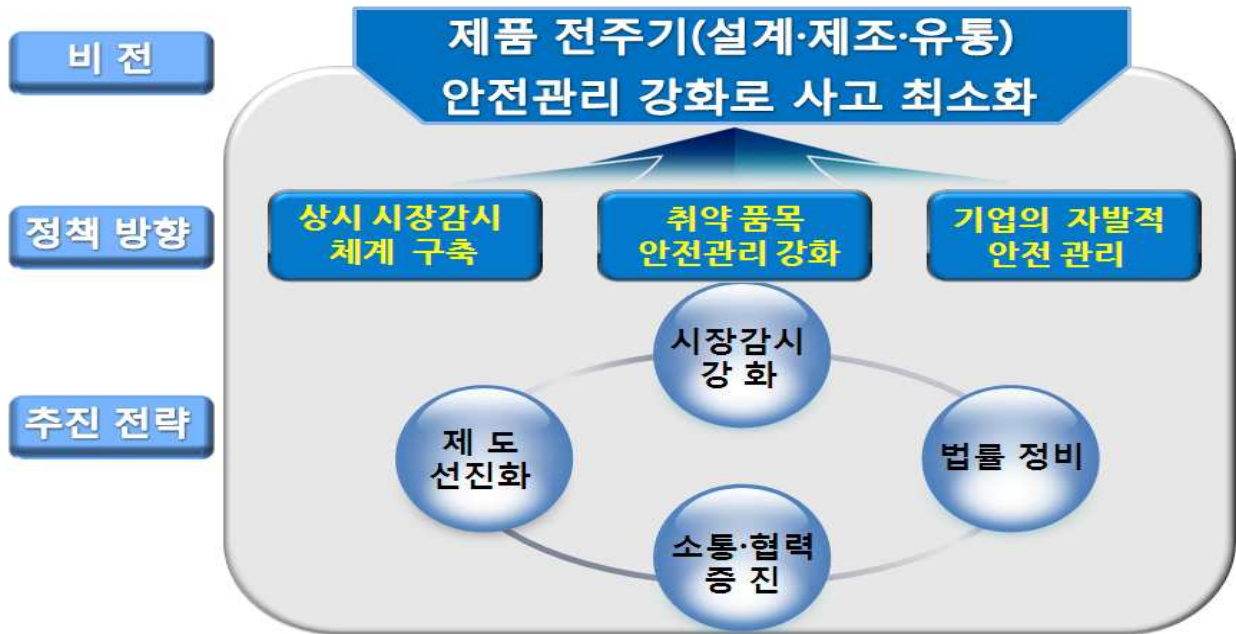
- 기업의 "사회적책임 강화"라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"소비자 안전 확보"를 위해서는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,
-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및 융·복합 신제품 출시 등 제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선진형 안전관리제도 구축이 필요

<제품안전관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도>



V 비전 및 추진전략

□ 비전과 전략



□ 중점 추진과제 : 4대 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

추진 전략	중점 추진과제
시장감시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20대 안전취약품목 선정 및 중점 관리 ② 리콜처분 확대 및 이행률 제고 ③ 온라인시장 감시 강화 ④ 사고정보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확립
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전인증 품목 단계적 완화 ②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③ 안전기준 제·개정 시스템 개선
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품 소관영역 명확화 ② 사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③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 의무화 ④ 리콜 행정주체 재정립
소통·협력 증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부·사업자·소비자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② 사업자·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③ 국제협력 확대

VI 중점 추진과제

전략 1 시장감시 강화

- ❖ 20대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, 리콜처분 확대 및 온라인시장 감시 강화를 통해 위해제품 유통 차단
- ❖ 생활제품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프로세스 구축

1-1 20대 안전취약품목 선정 및 중점 관리

□ 소비자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불법·불량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'안전취약 중점관리 품목' 선정 및 안전관리 강화

- (품목선정) 인증품목 중 안전성조사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, 리콜 상위품목, 주요 사고다발 품목 등을 종합한 20대 품목 선정

<안전성조사 부적합률>

- '13년(11월까지) 안전성조사 부적합률이 평균 부적합률('06~'13.11 간 8년) 보다 높은 5개 품목 선정 [8년 평균 ➡ '13.11]

☞ (공산품)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(12.4% → 66.7%), 스포츠용구명복 (12.2% → 40%)

☞ (전기용품) 형광등용 안정기 (50% → 60%), 백열등기구 (33.3% → 45%)
전기찜질기 (81% → 90%)

<리콜 상위품목>

- '13년 기준 리콜 주요 상위품목인 4개 품목 선정

☞ (공산품) 아동용섬유제품(1위), 완구(2위)

☞ (전기용품) LED등기구(2위), 직류전원장치(3위)

* 전기용품 리콜 1위는 전기찜질기로 안전성조사 부적합률에 이미 선정되어 제외

<주요 사고다발 품목>

- 소비자 생활 속 사고 다발 품목인 11개 품목 선정
 - ☞ (공산품) 생활화학가정용품, 물놀이기구, 비비탄총, 재생타이어, 접착제, 물티슈
 - ☞ (전기용품) 멀티콘센트, 전기스토브, 전기온수매트, 전기방석, 형광등기구
 - * 호흡기질환 유발원인으로 지명된 가슴기살균제 사건(생활화학가정용품), 여름철 폭염으로 주행 중 재생타이어 펑크, 전기과부하로 인한 멀티콘센트(멀티탭) 화재 등

중점관리 대상 품목	
공 산 품	전기용품
완구, 아동용 섬유제품, 물놀이기구, 비비탄총, 재생타이어, 생활화학 가정용품,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, 스포츠용 구명복, 접착제, 물티슈(10개 품목)	전기찜질기, 전기온수매트, 직류전원장치, 멀티콘센트, 형광등용 안정기, 전기방석, 전기스토브, 형광등기구, LED등기구, 백열등등기구(10개 품목)

- (안전관리) '14~'16년간 매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,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활동 강화
 - 제품의 월별, 계절별 사용 특성*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실시
 - * 신학기 학용품, 여름철 물놀이용품, 겨울철 온열제품 등
- (품목관리) 시장감시(안전성조사, 시장모니터링 등) 결과를 재평가하여 집중관리대상 품목을 업데이트 관리
 - 시장유통현황, 부적합률 추이를 통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큰 제품은 집중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위해성이 낮은 품목은 대상 제외
 - 언론이나 제품안전포털 등을 통해 연간 집중관리대상 품목 사전 공개

1-2 리콜처분 확대 및 이행을 제고

- 부적합 제품에 대한 자발적 개선조치 축소 및 리콜처분 확대
 -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자발적 개선조치를 축소하고 생명·신체 위해 우려 제품은 예외없이 리콜 처분하여 기업의 제품 안전성 인식 제고
 - * 제품안전기본법 시행('11.2월) 최초 3년간 기업제도 차원에서 위반 정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 자발적 개선조치 위주로 행정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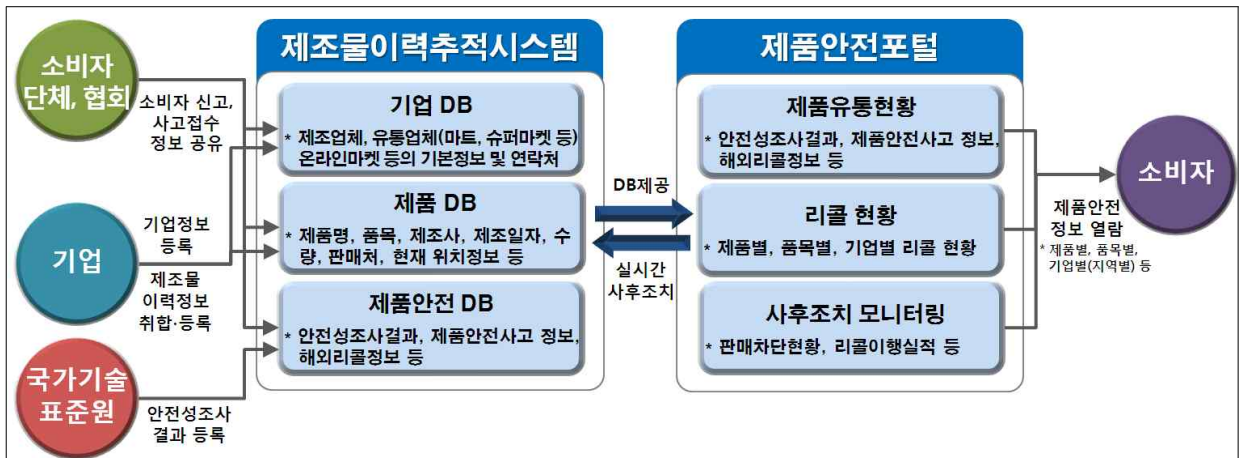
- 철저한 리콜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강화
 - 리콜제품 공표 방법 및 회수율 등 리콜이행에 대해 철저히 점검
 -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을 확대·운영하여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소매점, 문방구 등에서 리콜제품 집중 단속
 - 리콜 불이행 기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, 언론공표 등 후속제재 강화

- 『제품안전심의위원회』 구성요건 법제화
 - (현황) 시중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해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부적합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 이행 중
 - (필요성)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하는 위원회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자문위원회를 '심의위원회'로 규정함이 타당
 -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근거한 자문위원회를 제품안전기본법(이하 기본법) 상으로 규정할 필요
 - (개선방향) 리콜 등 행정처분 수준 결정, 리콜이행 점검결과 및 제품 사고조사 결과 심의 등을 담당할 『제품안전심의위원회』 구성 근거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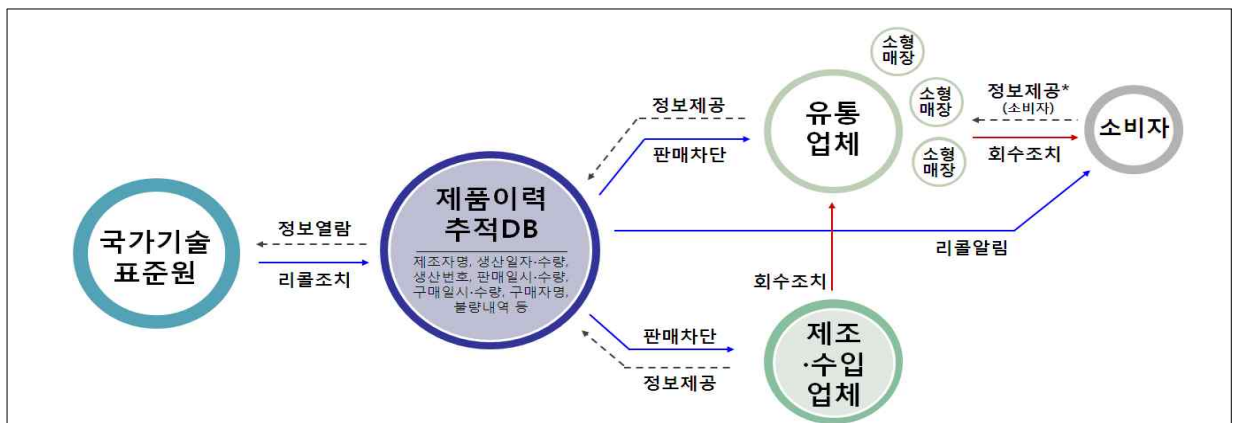
□ 제품이력추적제도 구축 검토

- (필요성) 제품 제조·유통 소단계에 걸친 시스템 관리로 위해제품 발견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를 위해 제도 도입 검토 필요
 - * (국내사례) 식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(식품안전정보원)
 - * (국외사례) 日 굴이력추적제, ICPS(국제제품안전공무원회의) 유모차 글로벌이력추적제도 등
- (구축내용) 생산·유통·판매 단계별로 수집된 제품정보를 제품명, 기업명, 지역별 검색을 통해 제품관련 기본정보(제품명, 제조사, 출고현황 등) 및 안전성 정보(인증일시, 검사항목, 리콜이력 등)를 One-Stop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- * (적용대상)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제품 중 선별하여 시범 적용 후 확대 추진

[제품이력추적 시스템 개념(안)]



[사용주체별 시스템 활용도]



1-3 온라인시장 감시 강화

□ 온라인 유통제품 대상 안전성조사 강화

- 온라인쇼핑몰에 유통되는 제품 중 불법·불량률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특정 쇼핑몰을 통해 구매 후 안전성 조사 실시
 - 안전성조사 시 온라인을 통한 샘플수를 확대하고,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KC 미표시 비율이 높은 제품*을 중점 조사
- * KC미표시 주요 적발품목 : 직류전원장치, 전기매트, 학용품, 예초기날 등
- 현행 품공법 및 전기용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 외에도 언론 등을 통한 사회적 이슈 제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 확대

□ 소비자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

- 선제적인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증된 제품만 쇼핑몰에서 판매하도록 온라인 유통업체와 MOU 추진
- 국가기술표준원(이하 국표원) 제품안전정보시스템과 온라인쇼핑몰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미인증제품의 온라인 판매 자동차단시스템 구축
 - * 현재는 소비자가 “11번가”, “옥션”, “G마켓”에서 제품 구입 시 ‘제품인증정보DB’를 활용하여 KC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 중



1-4 사고정보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확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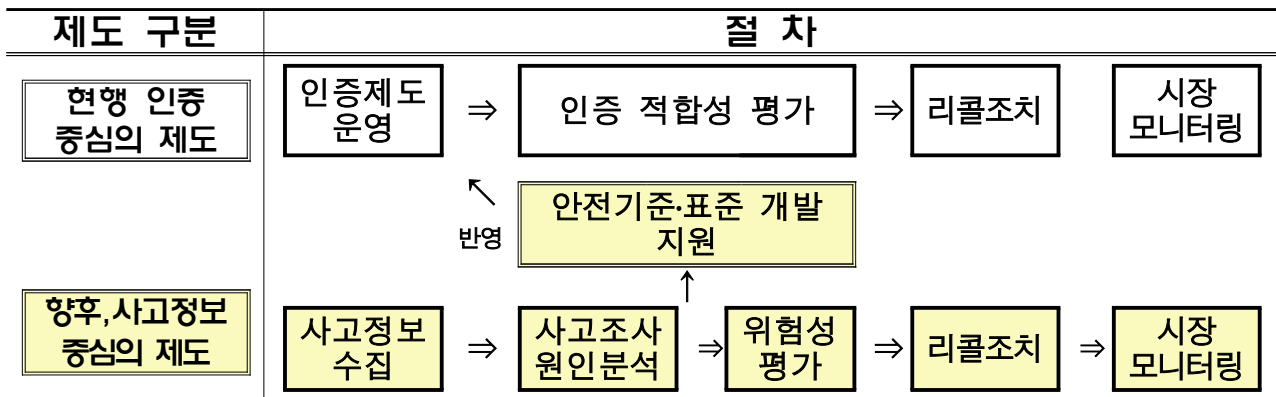
□ (현황) 사고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제도 운영 미흡

- 현재, 정보력 부족으로 유통제품의 안전기준(인증제도) 준수여부에 대한 시장조사 위주의 리콜제도 운영 ⇨ 리콜명령·권고 중심
- 위해제품 사고조사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는 선진형 리콜제도 운영 미흡 ⇨ 자발리콜문화 정착 필요

* 자발리콜/전체리콜(명령, 권고, 자발) (건수) : ('11) 8/113, ('12) 25/182 ('13) 8/217

※ 美, '12년 총411건의 리콜 중 약 70%(287건)가 사업자 보고에 따른 자발리콜임

【제도운영 체계도】



□ (추진방안) “정보수집·관리 - 조사·분석 - 활용·보급” 프로세스 확립

- (정보수집·관리) 제품사고·결함신고 전담 콜센터(제품안전정보센터) 설립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

<소비자 신고센터 운영현황>

- ◎ 전반적인 소비자 상담 :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(대표전화 ☎ 1372)
- ◎ 식품 (부정·불량식품 신고) :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(대표전화 ☎ 1399)
 - * 동 신고센터운영 및 관련 각종 식품안전정보 수집·분석은 “식품안전정보원”(식약처 산하)담당
- ◎ 자동차 (자동차결함 신고) : 자동차결함신고센터 (대표전화 ☎ 080-357-2500)
 - *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연구원에서 운영

- 소방방재청,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 정보수집 협업체계 구축
- 수집된 정보는 **제품안전정보시스템***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
 - * 각종 정보의 DB화를 통해 제품별·사업자별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
- **(조사·분석) 각종 사고정보에 대해서 위해도에 따른 분류를 실시하고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사고조사 실시**
 - 사고조사를 통해 분석된 **결함제품에 대해서 위험성평가기법***을 적용하여 **리콜수위(명령, 권고, 자발)를 결정**
 - * 위험성평가기법 : 사고발생확률·위해심각도 등을 기준으로 사고제품의 정량적인 위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
 - 사고조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험인증기관, 손해사정회사, 국과수 등과 연계하여 **전문강사 확보 및 교육 커리큘럼 마련**
- **(활용·보급) 분석·조사된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관리 효율성 확보 및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강화 지원**
 -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**안전기준 개발을 지원**하고, 시장감시 대상 품목 선정에 활용
 - 사고사례, 사고발생 원인 및 국내·외 리콜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**보고서를 발간**하고 이를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
 - *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있어 “품질리스크관리”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전품질에 대한 경쟁력 강화 유도

전략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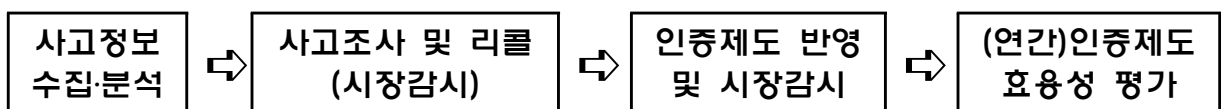
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

- ❖ 사전 인증품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 확대
- ❖ 신제품에 대한 적시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기준 의무 부과 방식 도입

2-1 사전인증 품목 단계적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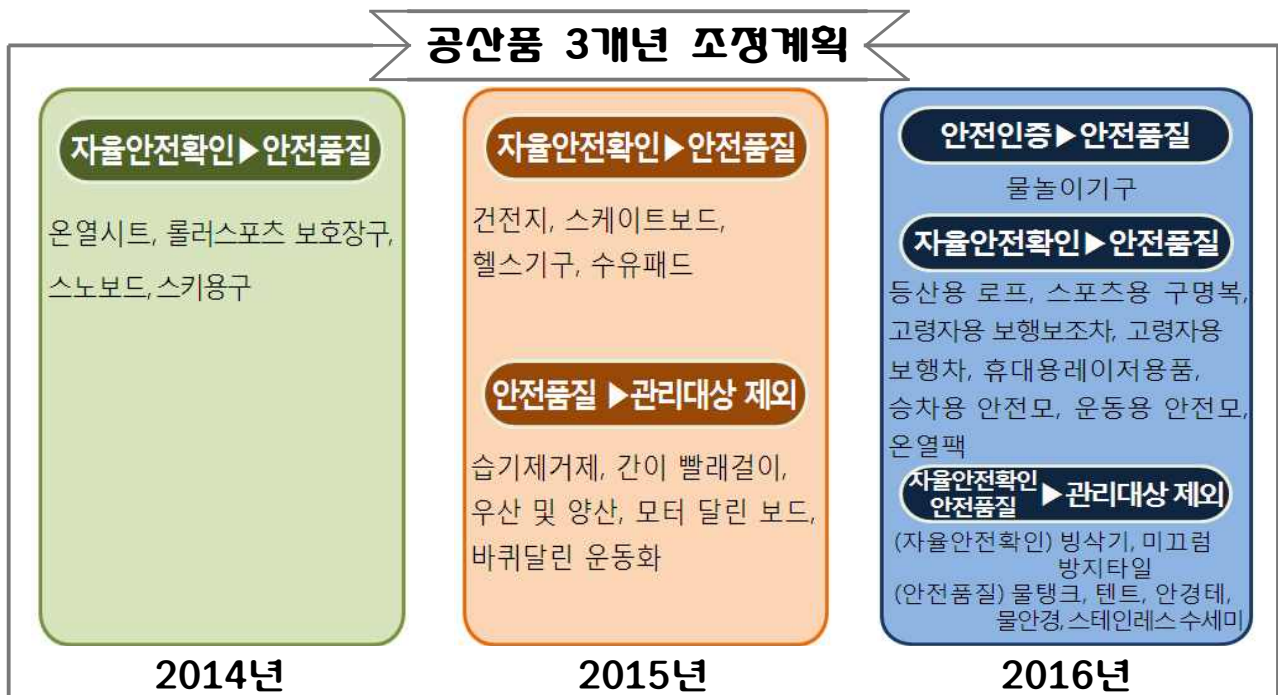
- (필요성)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기반한 안전관리를 위해 저위험 제품이 과도한 안전성 검증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재평가할 필요
 - * 국제적으로 先시장조치 성격의 제3자 강제인증인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, 시장감시 기능을 활용한, 後 시장조치 성격의 사후규제를 확대하는 추세
 - ** 이에, 국표원에서도 '13년 안전인증 13품목을 자율안전확인 12품목과 안전품질표시 1품목으로, 자율안전확인 33품목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조정한 바 있음
- (추진방안) 리콜, 사고정보 등을 통해 제품 위해도를 재평가하여 필수 유지품목을 제외한 제품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사전 인증수준 완화
 - 3개년에 걸쳐 인증품목들을 재조정하고, 연도별 조정 품목들에 대해선 사전 공지 및 유예기간 제시
 - 수집된 제품 사고정보를 통해 연간 품목 재조정 평가를 실시하여 시의성 있는 인증제도 운영

<사고정보 기반 인증제도 운영>



① 공산품 조정 계획

- 現 안전인증 품목 13종 중 안전사고 위해 수준이 높은 **12종** 유지
 - * 자동차용 재생타이어,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, 가스라이터, 비비탄총, 어린이놀이기구,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,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(조속기(調速機), 비상 정지장치, 완충기,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등 6종)
-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품시험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 **17종***은 안전품질표시로 전환
 - * 안전인증 품목(물놀이기구) 1종, 자율안전확인 품목(온열시트, 건전지 등) 16종
- 위해 수준이 낮은 품목 **12종***은 사전 강제인증에서 제외
 - * 자율안전확인 품목(빙삭기 등) 2종, 안전품질 품목(습기제거제, 안경테 등) 10종



② 전기용품 조정 계획

- 現 안전인증 품목 46종 중 안전사고 위해 수준이 높은 **27종** 유지
 - * 스위치, 전기다리미, 전기온수기, 전기충전기, 전기담요 및 매트 등 26종

- 안전인증 품목 19종*은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만으로 위해 방지가 가능하여 자율안전확인으로 전환

* '14년 8종(전기청소기 등), '15년 5종(전자레인지 등), '16년 6종(식기세척기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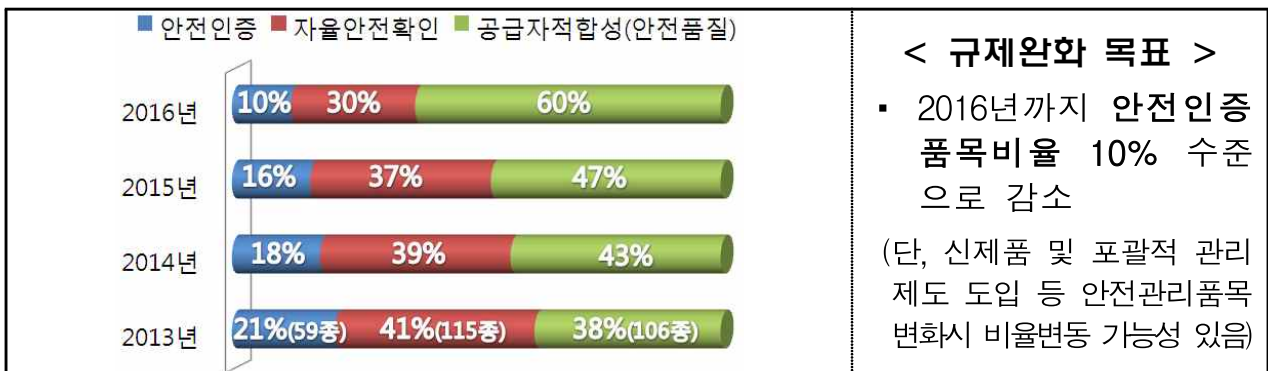
- 자율안전확인 품목 28종*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실시하는 제품시험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하므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전환

* '14년 9종(제분기 등), '15년 9종(노트북컴퓨터 등), '16년 10종(천공기 등)

전기용품 3개년 조생계획



[안전관리대상 품목 연도별 계획]



2-2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

□ 전기용품 대상 포괄적인 안전관리 시행

○ (필요성) 현행 전기용품 분류 체계로는 다변화되는 제품에 대한 신속한 안전관리에 한계 발생

- 이에, 인증품목 분류 체계를 재개편하고,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내포한 신제품의 경우 안전관리대상 의무화 추진

○ (추진방안) 신제품 출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체계를 재분류하고,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

① (제품분류) 국제 품목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신제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- 인증제도는 현행과 같이 3단계*로 유지하되 신제품은 '공급자 적합성확인 품목'에 우선 포함

* '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'으로 위해도에 따라 단계적 관리

- 추후 품목 재조정 평가를 통해 인증수준 재지정

② (안전기준) 신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 요건*을 반영한 안전기준 부과 규정 신설

* 모터 사용, 히터 사용, 고전압 또는 대전력 사용, 물 사용, 인체접촉 사용, 칼날 등을 사용하는 기기는 구조적으로 위험인자를 갖고 있으므로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

- 신제품에 대한 인증수준 재지정을 하면서 미흡한 안전기준 요건 추가

□ 어린이용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

- (필요성) 교통 및 익사사고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감소하였으나, 중독·질식·화재 등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

* 어린이 위해사례 접수(건) : ('09)11,438 → ('10)15,006 → ('11)20,733 (연평균 35% ↑)

- 현행 완구 등 40개 제품(약 65%)에 한해 사전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약 35%정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 필요

- (추진방안)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포괄적 안전관리제도 도입

① (관리품목)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

② (안전기준) 모든 어린이 신제품이 준수해야 할 공통안전기준 제정

- 현재 40개 품목에 한해 중금속(납, 카드뮴, 니켈), 가소제, 위해자석 등 5종만 있는 기준을 국제동향과 위해사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보완

* 제품오사용으로 인한 주의사항, 단추형 전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주의 문구 등 국제수준으로 규정

③ (협업)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효율화 제고를 위해 부처 간 협업강화

- 환경부 및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서 수행한 위해성평가결과를 제품 안전기준에 신속히 반영

- 관련 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공동대응

2-3 안전기준 제·개정 시스템 개선

□ 안전기준 제·개정 절차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現, 전기용품 778개, 생활용품 110개 등 전체 888개의 안전기준 운영 중이며 안전기준 제·개정에 약 1년 정도 걸림
- 입안 예고부터 최종 고시까지 행정절차상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기타 기술검토 등을 포함하면 통상 1년 정도 소요
- *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, 공산품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안전기준 운영 중



- (문제점) 업체 의견, 국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안전기준 운영 체계 부족 및 안전기준 마련에 장시간 소요됨
- (업체소통 채널 미비) 안전기준 제·개정 관련 업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화된 채널이 없음
- (국제동향 파악 부족) 국제표준 및 국제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안전기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부족
- (장시간 소요) '안전기준 개발 (약 6개월)' 및 '행정절차 (약 6개월)'에 긴 시간 소요

□ 개선방안

① 업체와의 소통 채널 마련

- (협의회 구성) 제조업체와의 현장소통 통로를 구축하고자 안전인증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11개 분야 '품목군 협의회'* 운영
 - * (협의회 구성案) 전기부품, 전기기기, 오디오·비디오·정보통신기기, 조명기구, 섬유, 화학, 금속, 생활용품1·2, 기계, 토건
 - 운영 사무국을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두어 분기별 품목군 협의회 개최
 - * 안전기준 항목의 타당성, 제품시장 동향 정보 등 의견 개선
- (상담창구 개설) 협회 내 “사업자 애로상담소” 창구를 마련하여 안전인증 애로 해소

② 국제 추세를 반영한 안전기준 운영

- 국제기구 대응 위원회(미러커미티)를 구성·운영하여 국제 표준·안전기준 동향 파악 및 국내 도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
 -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),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 발행한 국제문서를 검토하여 안전기준 제·개정에 활용

③ 안전기준 제·개정 기간 단축

- (공통안전기준 운영) 신제품 출시 시 공통안전기준을 토대로 추가 보완할 사항만 검토하여 신속한 안전기준 마련
- (KS 활용) KS 인증과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KS를 인용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KC기준 개정

전략 3

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

❖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성 확인의무 부과 등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제품안전 3개 법률* 간 체계화를 위한 정비

* 제품안전기본법(이하 기본법),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(이하 품공법), 전기용품안전관리법(이하 전안법)

3-1 제품 소관영역 명확화

- (현황) 기본법에 규정된 “제품” 영역이 광범위하여 제품안전관리 제도 운영에 한계점 노출
 - 또한, 기본법 상 각 조항의 행정주체가 제품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 존재
 - * <美, 日 사례> 제품안전관련 기본법에는 타부처 제품안전관련 법을 명시하고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제품별 소관부처를 명확히 함
- (개선방향) 타부처 개별법*으로 운영되는 제품별 안전관리 소관부처의 명확화 추진
 - * 화장품 · 식품 · 의료기기 (식약처), 자동차 · 선박(국토교통부), 승강기(안행부) 등
 - 용 · 복합제품 등 개별법령에 속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제품의 경우 관계장관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주체를 결정하는 조항 추가

3-2 사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화

- (현황) 기본법에서는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
 - 결함여부를 사업자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실제 보고 미흡
 - * 호주, 캐나다 등 주요국은 결함보고가 아닌 사고보고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있음
- (개선방향) 사업자가 ‘중대한 사고 발생 시 또는 발생할 잠재적 우려가 있음을 인지 시’에 수일 내 보고하도록 개정

3-3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 의무화

- (현황)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단속을 위해 공산품은 공정위 소관 “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”에 의거하여 중요정보 미표시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고,
 - 전기용품은 전안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불법제품 판매자 중 개별 판매자는 처벌할 수 있으나, 통신판매 중개자(옥션, 11번가 등)는 처벌근거 부재
- (개선방향) 개별법 안에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전자상거래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
 -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중요정보(인증마크, 인증번호 등)를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미인증제품의 취급 금지 등 규정 마련

3-4 리콜 행정주체 재정립

- (현황) 제품 수거등의 권고·명령 시 기본법과 개별법(전안법, 품공법) 간 행정주체가 달라 혼동의 여지 존재
 - 기본법은 “중앙행정기관의 장”, 개별법은 “시·도지사”가 불법·불량제품*에 대한 리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
 - * 불법제품 :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/ 불량제품 :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
- (개선방향) 불량제품은 “중앙행정기관의 장”, 불법제품은 “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”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법 개정
 - 불량제품은 안전성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괄하여 시행하고,
 - 불법제품의 경우 제품인증 미표시 등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여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시·도지사에게도 권한 부여

전략 4

소통·협력 증진

- ❖ 대국민 제품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정부-사업자-소비자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
- ❖ 국제제품안전기구 참여를 통해 위해제품 글로벌 유통차단에 대한 공동대응 및 제품안전 협력 확대

4-1 정부-사업자-소비자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

- 정보 수집 및 위해수입품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확대
 - (지자체) 전국 16개 시·도의 소비생활센터에 수집된 제품사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
 - (소비자단체) 각 단체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품 위해성 조사 결과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
 - 조사계획 수립 시 국표원 안전성조사 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채널을 구축하고,
 - 제품 시험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선 리콜 등 행정조치에 활용
 - (관세청) 수입제품 통관전 국표원 직원의 입회하에 수입물품의 샘플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
 - 국표원에서 구축한 수입제품관리 DB 중 주요 불법·불량제품 제조·수입업체에 대한 정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DB 연계

□ 안전관리품목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

- (필요성) 동일 품목에 대해서 사용목적별로 관리수준이 상이하고 관리기관이 이원화되는 등 관련 업계 및 소비자의 혼란 야기
 - * <사례> 물티슈 품목군 내 인체세정용 물티슈(산업부), 구강청결용 물티슈(식약처)가 해당 법령에 따라 분리되어 관리 중
 - 이에,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조화 및 관리기관 조정을 논의할 수 있는 부처 간 협의 창구 필요
- (추진방안) 공산품(환경부, 식약처, 복지부) 및 전기용품(미래부) 분야별로 나누어 생활제품 전문위원회* 운영
 - * 신제품, 파생제품의 안전기준, 관리항목, 적용범위 논의 및 현행 중복되거나 유사성 있는 품목의 안전관리 기준 조화 및 관리품목 재조정 협의
 - 각 부처별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고, 제품관련 안전정보에 대한 상호 교류 실시
 - 필요에 따라 인증기관,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참여 하에 외부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

【주요 협의계획】

● 공산품 17개 품목 “환경부” 업무이관 추진

⇒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품공법 관리 8개 품목* 및 안전기준 개발 후 관리 예정인 9개 품목**의 안전관리업무 이관 (‘15.1월)

* 세정제, 방향제, 접착제, 광택제, 탈취제, 합성세제, 표백제, 섬유유연제 (총 8개)

** 문신용 염료, 소독제, 방충제, 미생물 탈취제, 방청제, 김서림 방지제, 방부제, 자동차용 스프레이, 물체 염·탈색제 (총 9개)

● 인체세정용 제품(물티슈) 안전관리업무 관계부처 협의

⇒ 제품 사용 용도에 따라 다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일원화 하도록 안전기준 및 품목 관리기관 재지정 검토

● 이외 관리부처 조정 필요성 있는 품목(일회용 기저귀, 화장비누 등) 추가 검토

□ 사업자 소통 통로인 업종별 연락망 구축

- 안전관리제도 변경사항 전달 및 사업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업종별 협회·협동조합* 등을 활용한 연락망 구축

* 한국제품안전협회, 대한전기협회, 한국의류산업협회,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등
 - 협회 등에 미가입된 기업들이나 영세업체의 경우 각 시·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e-mail이나 홍보책자 발송을 통해 제도 변경사항 전파

□ 사업자 애로 상담소 '홈닥터' 제도 시행

- 리콜처분 받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의견 청취 및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창구 마련

- 제품안전포털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 받아 '제품안전 전문가 위원회*' 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지원 업체로 선정하여 지도

* 국표원, 한국제품안전협회, 제품안전관련 전문가(업계, 학계 등) 등으로 구성

- 리콜로 인한 설계개선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평가를 통해 기술지원 여부 결정

□ 민간주도 '제품안전정책 포럼' 운영

- 소비자 사용 제품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해 학계, 기업, 소비자 등이 참여하여 각 분야별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

- 제품안전정책, 시장감시, 기술개발 등으로 분과를 나누어 제도 운영체계 진단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정책수립에 건의

< 포럼 분과위 구성(안) >

분과위	세부 사항	참여 대상
▶ 시장 감시	시장감시활동 관리·계획·개선	지자체, 시민단체, 기업
▶ 리스크평가	리스크 평가기법 지속적인 강화	기업, 학계, 협회
▶ 교 육	제품안전 훈련 및 우수사례 공유	중 대상
▶ 기술 개발	제품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안전 기술개발	기업, 학계

* (사례) EC지원으로 EU차원의 시장감시강화 등을 목적으로 PROSAFE 포럼 설립·운영 중

4-2 사업자·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

□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공

- 국내 제도운영 관련 **홍보를 강화**하고, 제품안전 통계자료를 분기별 또는 연간 분석·평가한 **정책자료** 발행
 - (**홍보물**) 대국민 제품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국내·외 **홍보용 브로셔**를 제작·배포하고, **공익광고** 등 실시
 - (**정책자료**) 국내 안전관리 실적을 토대로 **리콜조치 분석보고서**, **제품사고평가 보고서** 등을 발간하고, **국내·외 제품안전 동향*** 제공
- * 미국, 일본, EU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등 법·제도적 변화양상 제공

□ 사업자 대상 ‘안전품질경영’ 지원

- 제품 공급망 전주기에 따라 각 단계별 안전관리 점검을 할 수 있도록 **체크리스트** 및 **경영평가 기법** 개발
 - **국제적으로 통용**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문서 개발
- * ‘13년 공급자관점에서 준수해야 될 표준문서인 ISO 10377(소비자제품안전-공급자 가이드라인), ISO 10393(소비자제품리콜-공급자 가이드라인) 등 발행

□ 소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

- 사고대응에 취약한 **어린이나 노약자** 등이 사용하는 **제품***을 대상으로 **안전주의 교육자료** 배포
 - * 어린이놀이기구, 완구, 유아용 이단침대, 전기장판, 전기매트, 고령자용 보행차 등
- 계절별 사고다발 품목에 대해 제품 사용에 따른 **주의사항 전파** 및 **사고위험 대비 체크리스트** 등을 제공

4-3 국제협력 확대

□ 국제협력 채널 다양화 및 협력수준 제고

- (양자협력) 중국, 동남아 등 다수입국, 불량제품 다수 발견국가 등을 선정하여 MOU 체결을 통한 제품안전 협력 확대

* 現 MOU 체결국 : 日('08), 美('12), 페루('12), 브라질('12)

- 제품안전정보 교환 및 직원 파견 등을 내용으로 양자간 MOU 추진

* 국내 리콜제품의 제조국 해당정부에 리콜사유 및 조치내용 통보

* 상호 제품안전 관련 안전기준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·지원 등

- 既 협력국과 직원 교육 연수프로그램 실시 등 선진제도 습득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활발한 협력활동 전개

- (국제기구) 각종 제품안전기구* 참여를 통해 국내 제도전파 및 선진제도 도입 뿐만 아니라 위해제품 글로벌 유통차단에 공동대응

* OECD CCP(소비자정책위원회), ICPSC(국제제품안전공무원회의), ICPHSO(국제소비자제품안전심포지움) 등

□ 개도국 대상 국내 제품안전제도 전파

- ODA(공적개발원조) 사업 일환으로 인증대상 품목별 해외 제조 비율이 높은 국가를 우선으로 하여 국내 인증제도·기술기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

* 국내 인증제품(공산품, 전기용품) 중 중국 등 아시아지역 제조비율이 약 80%로 대다수를 차지하며, 이들 신흥국가들 대상으로 리콜비중이 확대 추세

Ⅶ 향후 추진일정

과 제 명	추진일정		
	'14	'15	'16
1. 시장감시 강화			
1-1. 20대 안전취약품목 선정 및 중점 관리			
1-2. 리콜제도 개편 및 리콜이행률 제고			
자발적 개선조치 축소 및 리콜조치 확대			
철저한 리콜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강화			
『제품안전심의위원회』 구성요건 법제화			
제품이력추적제도 구축 검토			
1-3. 온라인시장 감시체계 강화			
온라인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강화			
온라인 유통업체와 MOU 및 시스템 연계			
1-4. 사고정보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확립			
2. 제품안전관리제도 선진화			
2-1. 사전인증 품목 단계적 완화			
2-2.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			
전기용품 포괄적 안전관리 시행			
어린이용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			
2-3. 안전기준 제·개정 시스템 개선			

과 제 명	추진일정		
	'14	'15	'16
3.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			
3-1. 제품 소관영역 명확화			
3-2. 상해정보 수집·분석 기능 강화			
3-3.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 의무화			
3-4. 리콜 행정주체 재정립			
4. 소통·협력 증진			
4-1. 정부-사업자-소비자단체 간 협력 기반 구축			
유관기관 협력 확대			
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			
업종별 연락망 구축			
'홈닥터' 제도 시행			
'제품안전정책 포럼' 구성			
4-2. 사업자·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			
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공			
사업자 대상 '안전품질경영' 점검 지원			
소비자 대상 안전주의 교육 실시			
4-3. 국제협력 확대			
협력채널 다양화 및 협력수준 제고			
개도국 대상 국내 제품안전제도 전파			